

10.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26일
- 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장(재난안전실장)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일
- 상정일자 :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17년 11월 22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난안전실장 최삼룡)

□ 제안이유

- 타 시·도 대형 재해·재난 발생시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복구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기금의 용도에 '타 시·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' 신설(안 제3조).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서오섭)

○ 조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

- ▶ 대구시는 중앙로 지하철역 화재사고, 서문시장 화재사고 등 대형재난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, 재난 발생시 타 시·도로부터 복구비 지원을 받아왔으며, 대구시도 타 시·도 재난발생시 대외협력 차원에서 복구비용 지원을 해왔음.
- ▶ 현재까지는 타 시·도 재난 발생시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'재난관리기금⁵⁾'에서 그 경비를 지출해 왔으나, '재난관리기금'으로 타 시·도 재해복구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'재해구호기금⁶⁾'으로 하는 것이 기금의 성격에 맞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

- ▶ 안 제3조제4호에서 기금의 용도에 '타 시·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'를 신설하여 타 시·도의 대형 재난 발생시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.
- ▶ 이는, 타 시·도 재해발생시 복구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, 예산집행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됨.

○ 재해구호기금 적립·사용 현황을 보면

- ▶ 2017년까지 법정적립액 538억 6,800만원 대비 497억 5,200만원을 적립하여 92.3%의 적립율을 나타내고 있으며, 2018년도에 기금을 적립하면 적립율 100%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 그러나, 그동안 기금 사용현황을 보면 '서문시장 피해상인 생계구호비' 7억원 등 총 13억 3,100만원을 집행하여 2.7%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,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법정적립액이 적립되고 있으므로 해가 갈수록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음.

5) 재난관리기금 :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

6) 재해구호기금 :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,000분의 5

- ▶ 긴급한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적립만 한다는 것은 재정운용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, 기금이 일정규모에 도달하면 기금 추가적립을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금 적립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?○ 자금을 묶어놓는 것 보다 활용하면서도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법정적립액을 준수해서 할 계획임.○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